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임기 (안 제2조 및 제3조)
-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및 제5조)
- 간사, 회의록 작성 및 운영세칙 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)은 제20조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

류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) 제16조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.

참 고

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(지역물류정책위원회)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.
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(지역물류정책위원회)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·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1. 관할 및 인접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
2. 해당 시·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
3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.
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영은 2008. 2. 4.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, 우리 도는 그간 별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‘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하여 왔음.
- 그러나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과 영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고, 특히 지난 '22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도민의 삶의 질과 직

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조례를 제·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
참 고

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(* 전북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최초 조례로 ‘일부개정’ 조례임)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02.01.05	02.07.11	00.10.30	02.03.25	04.05.15	01.03.16	01.09.29	13.09.30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*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02.06.29	05.03.05	00.12.30	07.02.02	20.11.26	03.10.20	02.05.16	09.01.07

나.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.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2조는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등 위원에 관하여 규정함.
 - 안 제4조는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.
 - 안 제5조는 회의 소집 요건과 개의·의결 정족수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.

- 다만, 안 제3조제3항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▲ 충청북도 및 인접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, ▲ 충청북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, ▲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중 충청북도의회의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.
-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영 제16조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으로, 그 외의 사람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,
- 타시도에서 시도의회의원을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나,* 안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 중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* 인천, 대전, 세종, 충남, 제주 등 5개 시·도

-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3. 4. 7.~'23. 4. 2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

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
-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운영 등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,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충청북도의회의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, 안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존중하여 추후 충청북도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